◉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1024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에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우정사업본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5급 6명, 6급 12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650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목 번호에 맞추어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6급 1명)으로 조정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bavilia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